

FTA-PASS 소식지

November. 2024 _ vol.142

CONTENTS

Cover Story

NEWS

-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 개정고시

FTA-PASS STUDY

- » FTA-PASS를 통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하기(2/2)

FAQ

- » 판정실패 오류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하나요?(1/2)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인 원산지소명서 및 관련 입증서류*를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등 1종으로 대체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농어민의 FTA 활용 및 수출지원을 위하여 농축수산물 등의 원산지증명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며 주요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사용 승인서와 인증 품목 및 축산물(꿀)등급 판정확인서와 천연꿀을 원산지확인서로 추가 인정하여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제조공정도, 재료명세서(BOM), 원재료구입명세서, 물품공급계약서, 원재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원산지확인서 등

1.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하는 품목 및 서류

- ① 농산물: 1,028개 품목,
- ② 수산물: 81개 품목,
- ③ 축산물: 5개 품목,
- ④ 식품류: 39개 품목,
- ⑤ 지역특산품: 47개 품목,
- ⑥ 재활용 공산품: 25개 품목

01

현행

- ① 농산물: **1,030**개 품목,
- ② 수산물: **97**개 품목,
- ③ 축산물: **6**개 품목,
- ④ 식품류: 39개 품목,
- ⑤ 지역특산품: **48**개 품목,
- ⑥ 재활용 공산품: 25개 품목

02

개정안

- ① 농산물: 냉동애플망고, 신선새싹삼
- ② 수산물: 활납치, 활전복, 김(건조), 해삼(건조), 봉장어 필레 등
- ③ 축산물: 천연꿀
- ④ 식품류: -
- ⑤ 지역특산품: 냉동삼치
- ⑥ 재활용 공산품: -

03

개정 세부 내용

2. 인정서류

현행					개정안			
구분	서류명	발급근거	발급기관	서식	서류명	발급근거	발급기관	서식
수산물	⑦ 수산물 품질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서식7	⑦ 수산물 품질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의 품질인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서식7
	신설				⑩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 사용승인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45조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단법인 한국수산회	서식20
식품류	⑰ 우수천일염인증서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국립목포대학교·천일염사업단	서식17	⑰ 우수천일염인증서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천일염인증기관	서식17
축산물	신설				⑱ 축산물(꿀)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축산물품질평가원 (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서식21

FTA-PASS를 통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하기(2/2)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업무 처리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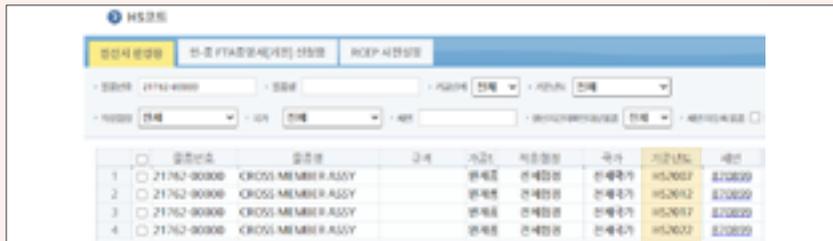
- 1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FTA-PASS 사이트에 로그인(회원가입)하여 원산지정보를 등록하고 원산지판정을 수행한다. 그 후 원산지가 충족된 물품에 한해서 인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한다.
- 2 인증업무는 본부세관(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및 평택직할세관에서 하며, 인증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한다.
- 3 이때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관련 자료로 서면심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보정요구하거나 현지확인 등을 할 수 있다.
- 4 인증을 받은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상호·주소 등 일반적인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인증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서를 교부한다.
- 5 관할 세관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원산지 인증수출자에게 연장 신청을 안내하고,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인증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 6 만약 세관장이 원산지 인증수출자에게 인증 취소사유가 발생되어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청문 등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판정실패 오류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하나요?(1/2)

HS코드 메뉴에 정보를 잘못 등록한 경우 판정실패 오류가 발생합니다. 판정실패 사유 첫 번째는 ❶세번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❷잘못된 세번을 등록한 경우, 세 번째는 ❸분류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01 물품의 세번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세번은 협정별로 다른 기준년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협정에 맞는 세번을 등록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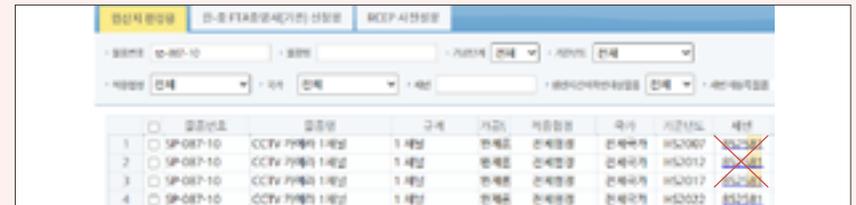
만약 국내유통 업체라면 위 이미지와 같이 하나의 물품에 대해 총 네 개의 기준년도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준년도를 하나라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등록하지 않은 기준년도에 해당하는 협정은 원산지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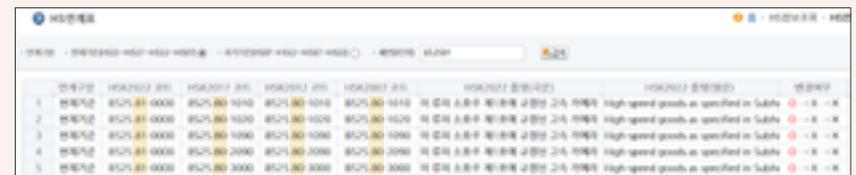
만약 해외수출 업체라면 해당 국가가 포함된 협정의 기준년도를 등록해야 합니다.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한-베트남, 아세안, RCEP 협정을 활용하는 업체라면 HS2017, HS2022 두 개를 다 등록해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02 잘못된 세번을 등록한 경우

HS코드 메뉴에서 엑셀로 일괄등록할 경우 잘못기입된 세번이 정상적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협정에 맞는 기준년도를 입력하여도 판정실패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다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이미지처럼 세번 852581의 경우 기준년도 HS2022만 사용되는 세번이기 때문에, HS2007, HS2012, HS2017은 852580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HS정보조회>HS연계표] 메뉴에서 세번 입력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협정별 기준년도 구분

항목	구분	협정
기준년도	HS2007	EU, 튀르키예, 뉴질랜드, 인도, 페루, 영국
	HS2012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중국, 칠레, 싱가포르, 중미, 이스라엘
	HS2017	APTA, 아세안,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EFTA
	HS2022	RCEP